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골재채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수행 및 운영을 위해 업무 대행기관을 추가하고, 탄력적인 골재 생산량 확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대행 기관 추가(안 제4조 및 제5조)

골재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업무 대행기관으로 추가

나. 골재선별·세척 등의 변경신고 대상 완화(안 제33조)

골재선별·파쇄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한 양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생산할 경우에는 변경신고 없이 가능토록 규제 완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이하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이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업무의 대행) 법 제4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골재산업연구원

제3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골재의 연간 생산량(골재채취능력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 신고한 생산량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협회”를 “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골재자원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제4조(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 ----- ----- ----- -----. 1. ~ 4. (현행과 같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이하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이라 한다)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5조(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업무의 대행)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골재산업연구원
제33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제33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1. <u>골재의 연간 생산량</u> 2. 3. (생략) 제38조의2(공제사업의 허가 등) ① <u>협회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u> 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신청서 에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정 관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⑤ (생략)	----- -----. 1. <u>골재의 연간 생산량(골재채</u> <u>취능력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u> <u>신고한 생산량의 10%를 초과</u> <u>하는 경우에 한한다.)</u> 2. 3.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공제사업의 허가 등) ① <u>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u> <u>(이하 “협회”라 한다)</u>-----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3546